

#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34
----------	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6월 30일

제안자 : 교통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2013년 10월 12일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요금 인상분에 택시운수종사자 복장비가 이미 포함되어 있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될 수 있는 바, ‘복장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’는 부분을 삭제하되 운수종사자 복장 규정을 신설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코자 함

## 2. 주요 골자

- 가.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(안 제11조)

## 3. 참고 사항 : 생략

##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동 개정조례안 제10조를 현행 조례와 같이 하고,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운수종사자 복장)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택시운행 시간에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(의원발의안)	수정안(교통위원회)
<p>제10조(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)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&lt;신 설&gt;</p> <p>제11조 ~ 제17조</p>	<p>제10조(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 등) ①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으며,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택시운행 시간에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복장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10조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운수종사자 복장)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택시운행 시간에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 ~ 제18조 (현행 제11조로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며,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(운수종사자 복장)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택시운영 시간에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     행	수정안(교통위원회)
제1조 ~ 제10조 (생략)	제1조 ~ 제10조 (현행과 같음)
〈신 설〉	제11조(운수종사자 복장)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 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택시운행 시간에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.
제11조 ~ 제17조 (생략)	제12조 ~ 제18조 (현행 제11조로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)